

실의결과 원안대로가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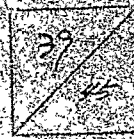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42	11	1982. 5. 8	증제 하 영 기

의 안 「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」 일부 개정

의결사항 「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외관계 법조항 「한국은행법」 제 57 조 및 제 59 조

제외취지 / 지준예시액의 과소로 일부 금융기관의 교환결제 자금 부족이 우려되므로 지준율을 인상함으로써 통화관리와 교환결제와의 원활화를 도모하고



2.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선 다점권을 2차
법위내에서 지준대상예금에서 차감할 수
있도록 함으로써 예금다점권과 기타 다
점권의 분류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빈
잡을 해소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
결한 것을 재의함

참고사항 1. 세외관계 법개정항

가. 한국은행법 제 57조

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
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책정
을 금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
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② 예금지급준비금의額は 제 58조에 규정
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분의 50이하
로 하며 보는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
적용한다.

다만,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협동

2.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선 타점권을 일종
법위내에서 지준대상예금에서 차감할 수
있도록 함으로써 예금타점권과 기타 타
점권의 분류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변
합을 해소하고자 본건 선거와 같이 이
설한 것을 제의함

참고사항

1. 세의관계 법조사항

가. 한국은행법 제 57조

-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
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비율
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
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- ② 예금지급준비금의額は 제 58조에 규정
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분의 50이하
로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일률적으로
적용한다.

나만,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

소함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
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

나. 한국은행법 제 57조

금융통화위원회는 제 57조, 제 58
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.

1. 우부불예금과 기한부예금 또는 기타
금융통화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공부별
은행예금에 대한 개별적 최저 예금지급준
비율의 결정

2. 최저 예금지급준비금의 100분의 20까지
한국은행권으로써 보유하는 것의 허용

2. 참 무 물

가. 지준상환

나. 지준을 인상에 따른 유동성 통괄 결과

다. 통화증량추이

라. 예금지급준비율 변천 추이

986

(省 略)

金融機関の預金支給準備率の現行と改正(表)

現

第1條 (省 略)

第2條 (預金支給準備金の最低率)

① 韓國銀行法 第50條 및 第51條에 의하여 各 金融
機關이 保有하여야 할 預金支給準備金の 最低率は 다음
과 같다

預 金 種 別	支 給 準 備 率
貯 蓄 性 預 金	3.5 %
要 求 拂 預 金	3.5 %

② - ③ (省 略)

第3條 (省 略)

改 正

(省)

第1條 (現行과 省 略)

第2條 (預金支給準備金の最低率)

① 韓國銀行法 第50條 및 第51條에 의하여 各 金融
機關이 保有하여야 할 預金支給準備金の 最低率は 다음
과 같다

預 金 種 別	支 給 準 備 率
貯 蓄 性 預 金	5.5 %
要 求 拂 預 金	5.5 %

② - ③ (現行과 省 略)

第3條 (現行과 省 略)

現

行

政

正

本

第 4 條 (支給準備金の計算)

① (省 縣)

支給準備 対象預金の計算に 對し 差減額 并 又は

預金他店券の範圍に 韓國銀行 總裁の 決定する 所を 指

す。

第 5 條 - 第 6 條 (省 縣)

(新 設)

第 4 條 (支給準備金の計算)

① (現行 市 縣 等)

支給準備 対象預金の計算に 對し 差減額 并 又は

他店券の範圍に 韓國銀行 總裁の 決定する 所を 指

第 5 條 第 6 條 (現行 市 縣 等)

附 則

規程は 1922. 5. 23. 日 付 市 縣 支給準備金法

に 施行す。